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99

발의연월일: 2022. 6. 13.

발 의 자:김태년·조승래·이원욱

송옥주 · 홍성국 · 이성만

최기상 · 김영배 · 문정복

권칠승 · 김병욱 · 서동용

윤영찬 • 전혜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이는 자영업자의 세무신고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된 현재는 자영업자에 차별적인 정책이라 할 수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녀 1인당 소득기준을 1천만원씩 완화함(안 제95조의2).
- 나. 공제율을 연간 5,500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2%에서 17%로,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0%에서 15%로, 각 5%씩 인상함(안 제95조의2).
- 다. 연간 공제 한도를 8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를 허용함(안 제95조의2).
- 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공제를 삭제함(안 제12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 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를 "7천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이하인 자가 기준시가 5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의 임차 등"으로.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 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1에"를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1 00분의17]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8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u>7천만</u>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이하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인 자가 기준시가 5억원(「수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u>다) 이하인 주택의 임차 등</u>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	
액의 <u>100분의 10[해당 과세기</u>	<u>100분의 15[해당 과세기</u>
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100
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분의17]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제 의료비 등 공제) ①·② (생 략)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 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 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 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 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 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 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

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